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14
----------	-------

발의연월일 : 2026. 7. 16.

발 의 자 : 안상훈·백종현·김 건
이만희·고동진·박덕흠
김은혜·박성훈·박형수
진종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약류의 제조·사용·저장 및 폐기 등 주요 공정에 대하여 엄격한 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방산 및 정밀화학 제조업체의 세척공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화약류를 취급한 용기나 배관, 생산설비 등에 잔류하는 화약류 성분을 제거·세척하고 유지·보수하는 일련의 관리 공정은 현행법상 규제 대상인 ‘폐기’나 ‘제조’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화약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화약류 잔류물이 포함된 설비 및 장비에서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 공정을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의 기술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잔류 화약류 취급 과정에서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화약류의 세척) ① 화약류를 세척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척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의 제거를 위한 세척을 그 제조소 안에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화약류의 세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4조의2제2항에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세척한 자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35조제1항”을 “제34조의2제1항,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4조의2(화약류의 세척) ① 화약류를 세척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척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의 제거를 위한 세척을 그 제조소 안에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② 화약류의 세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u>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 설></u>	제73조(벌칙)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제34조의2제2항에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세척한 자</u>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74조(과태료) ① ----- ----- -----

부과한다.	-----.
1. 제9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2항, <u>제35조제1항</u> (총포는 제외한다) 또는 제6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 ----- ----- <u>제34조</u> 의2제1항, <u>제35조제1항</u>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